



제 418회 국회 (정기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우주개발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〉

■ 서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4072호)

2024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 건 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V . 검토의견	2
1. 우주개발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(안 제18조의8 신설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서천호의원 등 12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4. 9. 19.

다. 회부연월일 : 2024. 9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 그 밖에도 창업촉진, 전문인력 양성,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,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 제공,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,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,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8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우주개발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(안 제18조의8 신설)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8조의8(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
나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국민의 우주개발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주 분야 투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또한, 정부도 우주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.
- 우주항공청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‘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’ 사업¹⁾을 추진할 계획인데, 동 사업을 통하여 우주발사체 발사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.
- 우주항공청은 개정안에 대해 “우주항공 산업체 홍보, 인력 채용 및 대규모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우주분야 산업의 성장성 확보, 국제사회와의 교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”되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227

1)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고 우주항공 발사체 발사 홍보 등을 통하여 우주항공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5억원이 반영되었음.